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원중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805

발 의 년 월 일 : 2025년 05월 26일
발 의 자 : 김원중 의원(1명)
찬 성 자 : 강석주, 김규남, 김동욱, 김재진, 김지향, 김태수, 남궁역, 남창진, 문성호, 유만희, 윤영희, 윤종복, 이상욱, 이성배, 이원형, 이종태, 임춘대, 황철규 의원(18명)

1. 제안이유

○ 교통문화교육원은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운수종사자 가족 및 지역주민을 위한 부대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최근 킥보드 및 전기자전거의 잘못된 이용으로 학생들의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 교육이 매우 중요함.

○ 또한 2025년부터 교통문화교육원에서는 학생을 대상으로한 교통교육을 시행하고 있어 조례로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교통문화교육원의 위치를 지번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수정하고 띄어쓰기, 조의 순서 등 기타 조례 정비가 필요한 조항을 수정하여 조례의 체계성과 명확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통문화교육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교육 등 운영”을 추가함(안 제5조제4호)

나. 시장의 책무를 정비하여 교통문화교육원을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도록 명시함(안 제3조)

다. 교통문화교육원의 지번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수정하고, 띄어쓰기 및 조의 순서 등 조례를 정비함 (안 제1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5조의2, 제6조 및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 신　구조문대비표(첨부)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 앞의 "제2장 시설의 이용"을 삭제한다.

제3조, 제4조는 각각 제4조, 제5조로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이용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4조(종전의 제3조)에서 제목 "(적용범위)"를 "(다른조례와의 관계)"로 하고 제목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교육원"으로, "다른 법령이나"를 "다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5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 설치 및 운영

제5조(종전의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남현동 1063번지 6호”를 “남현1길 38-10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3항”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교육 등 운영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운영) 교육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제4호·제9호 및 제10의2호에서 정하는 공휴일을 제외하고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 정비 및 보수를 위해 월 2회 일요일을 지정하여 휴관할 수 있다.

제6조의 제목 “(시설의 이용)”을 “(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4조제2호”를 “제5조제2호”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로 한다.

제9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4조”를 “제5조”로 한다.

제15조제1호 중 “제5조”를 “제5조의2”로 하며, “운영·개관”을 “운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승객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 ---------- ---------- ---------- ---------- ---------- ----------.
<신 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이용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다른조례와의 관계) 교육원 ---------- ---------- -- 다른 ---------- ---------- ---------- 따른다.

<신 설>	제2장 설치 및 운영
제4조(설치 및 기능)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교육원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동 1063번지 6호로 하며, 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5조(설치 및 기능) ---------- ---------- ---------- 남현1길 38-10으---------- ---------- ---.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수종사자연수기관 기능 수행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3항---------- ---------- --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신 설>	4.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교육 등 운영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5조(운영의 원칙)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육원을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이용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삭 제>
② 교육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제	<삭 제>

4호・제9호 및 제10의2호에서 정하는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개관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 정비 및 보수를 위해 월 2회 일요일을 지정하여 휴관할 수 있다.	
제2장 시설의 이용	<삭 제>
<신 설>	제5조의2(운영) 교육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제4호・제9호 및 제10의2호에서 정하는 공휴일을 제외하고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 정비 및 보수를 위해 월 2회 일요일을 지정하여 휴관할 수 있다.
제6조(시설의 이용) ① 제4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거나 시설 등을 이용 또는 사용(이하 "이용 등"이라 한다)할 수 있는 자(이하"이용자"라 한다)는 운수종사자와 일반시민으로 한다.	제6조(이용) ① 제5조제2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운수종사자 교육) ① 여객	제8조(운수종사자 교육) ① 여객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 운수종사자의 교육을 교육원에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교육을 신청하여야 한다.	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9조(이용료) ① ~ ④ (생 략)	제9조(이용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결제하는 자에 대하여는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삭 제>
⑥ 둘 이상의 이용료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삭 제>
제10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제4조의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	제10조(운영의 위탁) ① ------ 제5조----------

기 위하여 교통 또는 문화분야의 비영리법인 등에 교육원을 위탁할 수 있다.	---------- ----------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사무의 위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사무중 다음 각 호의 사무는 수탁자에게 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15조(사무의 위탁) --------- ---------- ---------- ---------- ---------- ----------.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운영·개관 등에 관한 사항	1. 제5조의2---------- 운영 ----------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5조(설치 및 기능)제4호(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교육 등 운영)를 신설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교통문화교육원에서 예산을 기편성하여 추진 중(붙임1)이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주병준
추계세제팀장	김중헌
추 계 분 석 관	김지혜

☏ 02-2180-7952

e-mail : kjh0123@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

〔붙임 1〕 2025년 서울시 교통문화교육원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교육

학생 / 시민
교통안전교육

교육과정 안내 >
교육신청

교육과정안내 | 강사진소개
교육일정 | 교육신청

교육 문의
02)587-5407~8
전화상담 운영시간
월~금 : 09:00 ~ 18:00
토/일/공휴일 : 휴무

홈 > 학생/시민 교통안전교육 > 교육과정 안내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교통문화 선도를 위한 법규 교육]

최근 학생들의 개인형이동장치 등의 운행이 증가하면서 관련 사고와 법규 위반 사례가 늘고 있어 중 고등학교 및 초등학교 고학년 대상 교통문화 선도를 위한 법규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안전의식 제고 및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 **교육대상**
- 동작/관악구 내 중 고등학교 및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4~6학년)
  - 동작/관악구 17개 학교대상 진행 (선착순 접수)

■ **교육기간 :** 2025년 3월~12월

■ **교육방법 :** 학교 방문교육(학교 강당 또는 학교 방송실)

■ **교육시간 :** 약 45분 내외(학교와 협의 후 교육시간 확정)

■ **교 육 비 :** 무료

■ **교육신청방법 :** 교통문화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stecc.or.kr)
- 홈페이지 상단 "학생/시민 교통안전교육" 클릭 후 신청
- 접수기간 : 2025년 2월 14일부터 선착순 접수(수시접수)로 진행되며 신청학교는 교육원과 유선협의 후 교육일시 확정

■ **교육내용 및 시간**

교육시간(45분)	교육내용
5분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현황
10분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법규 이해
15분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사례 소개
10분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특성 및 사고 대처요령
5분	마무리(학습내용 정리)

※ 문의처 : 서울시교통문화교육원 교육부 권한준차장(02-587-5407~8)